

계약전 알릴 의무

1. 사고의 개요

1988. 5. 25 보험계약자 H와 보험자 D 사이에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도곡리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및 동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기계 등 동산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보험기간은 1988. 5. 25부터 1989. 5. 25까지 1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이 체결되었다.

1988. 6. 20 보험의 목적이 소재하는 위 공장건물내에 설치된 가네트기에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가 마찰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 등이 소실되었다.

본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자 D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면책처리하자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보험계약자 H(신청인)는 본건 계약체결시 영업소장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 후면에 메리야쓰 직물제조기 20대, 부직포(보온덮개)를 생산하는 펀칭기, 성형기, 가네트기 등 보험에 가입한 기계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순 관
<한국보험공사 분쟁조정국>

신청인이 메리야쓰 및 부직포를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업소장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중요한 증거로서, 보험자가 부직포를 생산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면책처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자 D(피신청인)는 본건 화재 당시 신청인이 메리야쓰가 아닌 부직포를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체결당시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직포제조업종은 인수제한 물건이기 때문에 인수 전에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요사항이므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내용

본건 분쟁사안을 심의한 손해 보험분쟁심의회에서는 보험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지급판정을 내렸다.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보건데 관련 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영업소장 J사이에 본건 계약체결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부직포(보온덮개) 기계시설중이라는 진술이 있었고, 부직포 기계를 포함한 본건 기계목록을 메모지에 기재한 후 동 기계의 금액을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니 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직포를 생산한다는 사실의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장 J로서는 신청인이 부직포 및 부직포기계에 대한 진술이 있었으면 동 부직포를 생산하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확인하여 부직포제조에 대한 계약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직포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도 이를 그대로 흘려버려 부직포 생산사실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중략……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4. 후설

손해보험계약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자가 위험담보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보험료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전제로 한 통계적인 기초위에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산출되는데, 동질적인 위험집단에 이질적인 불량위험이 들어 오게 되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수치상등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험도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위험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단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상황, 즉 그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위험상황은 보험자 스스로 조사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나 보험계약은 대량적·반복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하여 위험상황을 조사하여 위험선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위험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협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

가피하다. 여기에 계약전 알릴 의무제도의 본래 취지가 있다 하겠으며 우리 상법은 제651조에서 위험선택 및 평가에 협력하는 의무라 할 수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본문).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객관적 요건으로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不告知) 또는 불실고지(不實告知)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화재보험에서는 보통 건물의 구조나 성상, 사용목적, 용도, 주위의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되고 특히 공장물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이나 제조품목 등이 중요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651조 단서), 계약전 알릴 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H가 메리야쓰 뿐만 아니라 부직포를 생산하여 왔다면 부직포생산업종은 메리야쓰생산업종

에 비하여 위험도 및 보험요율이 높으므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메리야쓰요율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직포생산사실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이행여부를 떠나 보험계약자 H가 계약체결 당시에 부직포기계 시설중이라고 영업소장에게 진술을 하였다면 보험계약 체결후에 부직포생산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영업소장이 부직포에 대하여 약간의 관심만 가졌다면 부직포 생산여부 등 위험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충분히 계약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영업소장이 부직포에 대한 진술을 듣고도 이를 그대로 흘려버리고 위험조사를 소홀히 하여 메리야쓰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직포생산이라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에 편승하여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이 개재됨으로써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종종 물의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자는 계약인수시 고지의 대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량한 위험이 보험단체에 들어오고 또한 보상됨으로써 선의의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업계에 당부하고자 한다. ㉞